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자격증명시험

자격 증명 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운송 용 조종 사	<p>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조종사 중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p> <p>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p> <p>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p> <p>다)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p> <p>라)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p> <p>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p>

	<p>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10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p> <p>가)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7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p> <p>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p> <p>다) 3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p> <p>라) 5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p>
사업용 조종사	<p>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p> <p>가) 기장으로서 1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p> <p>나)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 한다.</p> <p>다)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비행경력(5시간</p>

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라)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5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헬리콥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으로서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총 30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다)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라) 기장으로서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

3)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활공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 조종으로 10시간 이상의 활공 및 10회 이상의 활공 착륙경력이 있는 사람

가)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활공 및 2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2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및 2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24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2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5회 이상의 실속회복(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4)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

	<p>함한 15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급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비행기, 원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30회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p> <p>가) 비행기, 원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15회 이상의 활공을 포함한 75회 이상의 활공경력</p> <p>나) 5회 이상의 실속회복</p> <p>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행조종경력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행선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p> <p>가) 비행선 조종사로서 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p> <p>나)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및 10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p> <p>다) 2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및 1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시간을 포함한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시간</p> <p>라) 2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교육훈련</p>
<p>자가용 조종사</p>	<p>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4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발급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항공기 중 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에만 해당하고, 경량헬리콥터는 헬리콥터에만 해당한다) 중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p> <p>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solo cross-country flight time)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륙·완전착륙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p> <p>나)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출발지점으로부터 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p> <p>2)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활공경력</p>

	<p>이 있는 사람. 다만,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활공 및 5회 이상의 활공착륙 경력이 있는 사람</p> <p>가) 단독 조종으로 3시간 이상의 활공(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p> <p>나) 출발지점으로부터 12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p> <p>다) 5회 이상의 실속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p> <p>3)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p> <p>가)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p> <p>나) 20회 이상의 이륙·착륙 비행경력</p> <p>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조종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p> <p>가) 3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45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p> <p>나) 비행장에서 5회 이상의 이륙·착륙(완전 정지 포함)</p> <p>다)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p> <p>라) 5시간 이상의 기장 임무 비행경력</p>
부조종사	<p>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과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40시간 이상인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시간은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하여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1)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p> <p>(2)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 이륙·착륙한 비행경력</p> <p>다) 야간비행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계기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p>
항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p>가) 야간에 행한 3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200시간(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비행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행시간을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야간비행 중 25회 이상 천체관측에 의하여 위치결정을 하고, 주간비행 중 25회 이상 무선위치선, 천측위치선 그 밖의 항법 제원을 이용하여 위치결정을 하여, 그것을 항법에 응용하는 실기연습을 한 사람</p> <p>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항공기관사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200시간 이상의 운송용 항공기(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조종한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연습을 100시간(5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경력을 인정한다) 이상 한 사람</p> <p>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을 받고 항공기관사업무의 실기연습을 5시간 이상 한 사람</p>
항공교통관제사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p> <p>나) 삭제 &lt;2025. 12. 5.&gt;</p> <p>다) 삭제 &lt;2019. 9. 23.&gt;</p> <p>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p>
전문항공교통관제사	<p>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p> <p>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부교통부장관이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p> <p>다)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3개월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이 경우 해당 경력에는 이 호 나목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응시자격란 나)에 따른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p>

<p>항공 정비 사</p>	<p>1) 항공기 종류 한정 필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신청하는 경우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자격증명 받으려는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 정비업 무경력 포함하여 4년 이상 항공기 정비업무경력(자격증명 받으 려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경우엔 활공기 정비와 개조에 대한 경력 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포함한다) 또는 「학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 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증명 받으려는 항공기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교육 과정 이수 후 정비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 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 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 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항공기 종류인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분야 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량항공기 종류인 경량비 행기 또는 경량헬리콥터 분야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각각 이수한 것 으로 본다.</p> <p>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해당 항공기 종류 한정 자격증명 받은 사람</p> <p>2) 정비분야 한정 필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신청하는 경우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항공기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전자·전기·계 기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전자·전기·계 기 관련 분야에서 정비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운항 관리 사</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 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사람 또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둘 이상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p>

	<p>운항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만 해당한다.</p> <p>(1) 조종을 행한 경력</p> <p>(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후 관제실무경력</p> <p>(3) 기상업무를 행한 경력</p> <p>(4) 삭제 &lt;2021. 11. 19.&gt;</p> <p>나) 삭제 &lt;2021. 11. 19.&gt;</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의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p> <p>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p> <p>마)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 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감독 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p> <p>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후 2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	--

나. 한정심사

심사 분야	자격별	응시경력
자격 증명 한정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항공기 종류의 한정의 경우는 자격증명시험의 비행경력을 갖춘 사람</p> <p>나) 항공기 형식의 한정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명시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제작사가 실시하는 지상교</p>

	<p>육(항공기제작사에서 정한 교육훈련과 동등 이상의 지상 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자가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비행기의 경우 20시간(왕복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2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나) 헬리콥터의 경우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3) 군·경찰·세관에서 해당 기종에 대한 기장비행시간(항공기관사의 경우 항공기관사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p> <p>(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지상교육 및 비행훈련과정(실무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p> <p>다) 항공기 등급한정의 경우 해당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p> <p>라)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p>
항공 정비사	<p>1) 항공기 종류 한정의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일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2) 전기·전자·계기 관련 분야 한정의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일부터 항공기 전기·전자·계기 관련 분야에 대한 2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전문항공 교통관제사	<p>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가) 이 호 가목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가) 및 나)의 요건을 갖출 것</p> <p>나)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의 근</p>

		<p>무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같은 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에 대한 한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른 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에 대한 한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각각 이를 줄여 적용할 수 있다.</p> <p>1) 비행장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비행장관제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9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2) 감시접근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시접근관제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3) 감시지역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시지역관제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조종 교육 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p>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가)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에 대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p> <p>나)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p> <p>(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p> <p>(2)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p> <p>(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교육</p> <p>(나) 비행훈련: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p> <p>다) 계기비행증명 소지(다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초급(활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		<p>가) 활공기에 대한 기장으로서는 1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p> <p>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p> <p>(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활공기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p> <p>(2)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활공기에 대한 다음의 교육훈련 이수</p> <p>(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p> <p>(나) 비행훈련: 활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과 20회 이상의 활공경력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p>
선임(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p>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등급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275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사람</p>
선임(활공기)		<p>활공기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10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사람</p>
계기 비행 증명	조종사	<p>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가) 해당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이 있을 것</p> <p>나)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장으로서는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총 50시간(이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기장으로서는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포함)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보유할 것</p> <p>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 종류에 관한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p> <p>(1) 지상교육: 가)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p>

	<p>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p> <p>(2) 비행훈련: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 이 경우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p>
--	--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 가.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경량항공기 조종사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p> <p>나)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p> <p>(1)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p> <p>(2) 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착륙한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p> <p>다)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p> <p>(1)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p> <p>(2)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p>

### 나. 한정심사

심사분야	자격별	응시경력
------	-----	------

조종 교육 증명	경량항공 기조종사	<p>1)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경력이 5시간 이상인 사람</p> <p>가)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p> <p>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p> <p>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p> <p>나)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경량항공기 종류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p> <p>다) 경량항공기의 종류별 비행경력(조종형 경량비행기의 경우에는 비행기 비행경력을, 경량헬리콥터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비행경력을 각각 포함한다)이 200시간 이상이고 다음의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사람</p> <p>(1) 조종교육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지상교육</p> <p>(2)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p>
----------------	--------------	---

비고

1. "정비업무"란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정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명시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한정심사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훈련을 해당 기종의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이수하고 그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서명한 교육증명서와 상기 한정심사 신청자격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군용 비행기의 기장으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총 1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 조종사로 1천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라. 형식의 한정이 요구되는 두 기종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로서 1천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5. 12. 5.>